



「2024년 시험대비」

세법 난이도별 모의고사 및 해설(3)

| 김용민 교수 | 박문각 공무원 노량진학원



※ QR코드를 통해
“체계적 세법강의!!”
세법 김용민교수의
강의일정을 확인할
수 있습니다.

14. 지방세법상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자동차 주행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「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」 제8조에 따른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납부기한까지 교통·에너지·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·경호·경비·교통순찰 또는 소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소유에 따른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가감하여 정할 수 있다.
- ④ 과세기간 중에 매매·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소유에 따른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·징수한다.

정답 : ③

출제영역 : 지방세법
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.

[난이도 : 중]

15. 지방세법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개인분의 세율은 1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.
- ② 개인분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.
- ③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 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한다.
- ④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.

정답 : ①

출제영역 : 지방세법

- ① 개인분의 세율은 1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.

[난이도 : 중]

16.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의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, 부과,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은 「부가가치세법」 제4조를 준용한다.
- ② 「부가가치세법」 제58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.
- ③ 지방소비세는 제65조에 따른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「부가가치세법」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.

정답 : ②

-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다음달 20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는 경우 특별징수의무자에게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.

정답 : ④

출제영역 : 지방세법

-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다음달 20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.

[난이도 : 중]

17.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- ②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다.
- ③ 담배가 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소비되는 경우에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.
- ④ 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제51조와 제52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다음 달 2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.

정답 : ③

출제영역 : 지방세법

-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것으로 본다.

- 1. 담배가 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소비되는 경우
- 2. 제조장에 있는 담배가 공매, 경매 또는 파산절차 등에 따라 환가(換價)되는 경우

[난이도 : 하]

18. 지방세법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,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으로 한다.
- ② 레저세의 세율은 100분의 20으로 한다.
- ③ 납세의무자가 제44조에 따른 장부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징수사무의 보조를 명할 수 있다.

정답 : ②

출제영역 : 지방세법

- ② 레저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.

[난이도 : 중]

19.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기 전에 해당 권리가 등록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징수하거나 더 많이 징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를 직접 환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세기본법」 제62조에 따른 지

방세환급가산금을 적용하여 환급하여야 한다.

- ②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.
- ③ 같은 채권을 위한 저당권의 목적물이 종류가 달라 둘 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 등기·등록관서가 이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채권금액 전액에서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기준이 된 금액을 뺀 잔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보고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.
- ④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.

정답 : ①

출제영역 : 지방세법

-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기 전에 해당 권리가 등록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징수하거나 더 많이 징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를 직접 환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세기본법」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[난이도 : 중]

20.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세특례제한법, 「지방세기본법」, 「지방세징수법」, 「지방세법」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「지방세법」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.
- ②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방자치단체는 5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,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정답 : ②

출제영역 : 지방세특례제한법

- ②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방자치단체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,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.

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,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.

1. 서민생활 지원,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,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2. 특정지역의 개발, 특정산업·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3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